

항공기 취급업체(지상조업 등) 추가 지원방안

□ 업체 상황

- 항공기취급업은 인건비 비중(75~80%)이 높고, 종사자의 70%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영업
-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지로 매출액이 급감(전년대비 50~80%)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

□ 추가 지원방안

① 계류장 사용료

- 현행 3개월간 20% 감면 → **100% 감면**(3~5월, 3월분 소급)

② 급유시설 임대료('20.4.1, 위기관리대책회의 결정·발표)

- 현행 6개월간 납부유예 → **20% 감면**(3~8월, 3월분 소급)

③ 고용유지지원금

- 중소기업 : 추가대책(3.25, 고용부)으로 지원수준 확대(2/3 → 90%)

* 우선지원기업은 휴업수당의 90%, 대규모기업은 2/3까지 지원

구분	지원 현황	추가 지원
중소기업	- 경영안정자금* 지원 - 고용유지지원금(90%) 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20%) - 구내영업료 납부유예(3개월)	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 100%)
중견, 대기업	- 고용유지지원금(2/3) 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20%) - 급유시설임대료 납부유예(6개월) - 구내영업료 납부유예(3개월)	- 계류장사용료 감면(3개월, 100%) - 급유시설임대료 감면(6개월, 20%)